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폐지이유

○ 「농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9721호, 2009. 5. 27, 시행:2009.11.28)됨에 따라 현행 「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현행 조례 폐지

4. 관련법령

○ 농지법(법률 제9721호, 2009.5.27, 시행:2009.11.28), 제44조～제48조(폐지)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□ 본 폐지 조례안은

○ 농지법이 2009. 5. 27 법률 제 9721호로 개정되면서 법 제44～48조가 폐지됨에 따라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운영 등의 근거가 없어지고

○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 등의 업무를 군수(읍·면장)이 직접 확인 심사하도록 함으로서 농지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한편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